

West San Martin Water Works, Inc.

미납 정책에 대한 서비스 중단

효력일: 2020년 2월 1일

연체 계정

청구서가 체납되는 경우, 공공요금 사무국은 청구액 납부 의무자·해당 고객 (이하 “고객”)에게 60일 후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연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후 19일 이내에 청구서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 통지는 계정에 지정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우편 주소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주소가 다른 경우, 2차 통보는 “해당 건물의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대체 납부 조정 또는 연장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은 대체 납부 조정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408) 683-2098 에 전화하여 연기(나중에 납부), 감액, 대체 납부 일정, 그리고 No. 11.B.1.e.에서 규정하는 미지급 요금에 대한 할부 상환(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의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후의 각 청구 기간에 요금 미납이 누적되더라도 본인의 수도 서비스 계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한, 대체 납부 약정을 준수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미납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려면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의 약식·정식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관련 정보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청구에 관한 불만사항은 CPUC의 소비자 업무 부서(CAB)에서 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cpuc.ca.gov/complaints/>, 전화번호: 1-800-649-7570 (오전 8:30 - 오후 4:30, 월-금) 주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nue, 3rd Floor, San Francisco, CA 94102. 분쟁이 제기된 고지서에 대한 위원회의 항소는 위원회의 실무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미납으로 인한 단수를 피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고객은 공공요금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청구서 이의 제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규칙 No.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입주인에 대한 통지

납부 기한이 지난 계정이 있는 경우, 공공요금 사무국은 서면 통지를 통해 입주인에게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연락을 드립니다. 단수되기 전 최소 10일 전에 서비스 종료를 통지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로 임차인/입주인에게 공공요금 사무국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est San Martin Water Works, Inc.

미납 정책에 대한 서비스 중단

효력일: 2020년 2월 1일

최종 서비스 종료 통지

60일 이상 납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현재 가정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종 서비스 종료 통지를 받게 됩니다. 최종 서비스 종료는 해당 지역에서 문고리 통지문 형식으로 알려드리며, 서비스 중단 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서비스 복구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하려면, 고객은 복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 비용에 대한 약관은 규칙 No. 11.c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사무국 연락처

West San Martin Water Works, Inc.
1005 Highland Ave
San Martin, CA 95046
408-683-2098